# 최근 독일 해약환급금제도 변화의 특징

강민규 변호사,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요약

- 독일 연방법원은 보험 약관에 기재된 해약환급금 조항이 명료하지 않거나 조기 해약 시 지급되는 환급금이 매우 적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약관 조항 내지 당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음.
- 이에 따라 독일은 최근 보험계약법을 개정하여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등을 보험계약법에 명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보험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큼.

- 독일의 보험계약법[1]은 최근 관련 법제의 현대화, 오래된 법제와 변화된 현실과의 괴리, 유럽연합의 소비자 보호주의 정책 추진 등으로 다수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해약환급금에 관하여도 중요 개정이 있었음.[2]

  - 보험해약환급금의 경우 독일은 2007년 개정 전까지는 계약법에 자세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지 아니하고 보험약관 등 간접인 방식으로 보험소비자를 보호해 왔음.
  - 독일은 2005년에 해약환급금 관련 약관 조항이 무효로 판결되는 등 사회 환경이 변화하자 이를 2007년 개정 법률에 반영하여 해약환급금제도를 변경하였고, 2012년 판결은 그 변경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사례가 되었음.

1) 1908년 5월 30일 공포되었으며 19010년 1월 1일 시행되었음.
2) 2007년 독일보험계약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해약환급금제도 이외에도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상담의무, 계약체결 전 보험사의 계약조건 통지의무, 모든 책임보험에 대한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요구권 인정), 이해관계의 공정한 균형(일반철회권 적용,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폐기, 피보험자의 제소기간 폐지), 생명보험의 현대화조치(해약환급금은 지급준비금에 의거 산정, 계약체결비 및 마케팅비용 공개) 등임. 오윤섭(2007), 「독일 보험계약법 개정동향」, 『외국법제동향』, 한국법제연구원, pp. 29~33.

■ 독일연방법원(BGH)은 2005년에 보험해약환급금이 쟁점이 된 소송에서 보험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보험의 투명성 등을 강조하며 당해 보험계약을 무효로 판결함.

- 동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약환급금 산정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계약 체결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투명성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당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한 것임.
- 투명성의 원칙(Transparenzgebot)이란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문안(약관 등)은 명료하고 소비자가 이해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써 이를 위반한 약관조항 등은 무효임(독일 민법 제307조 제1항 후단[3]).

■ 독일 연방정부는 2006년 10월 상기 판결 등을 반영하여 보험계약법에 해약환급금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확정하고 연방의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8년 1월부터 시행하였음.

- 보험자의 환급금 지급의무를 명시하고 특히 보험자의 해제나 취소의 경우에는 환급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음(독일보험계약법 제169조 제1항, 2항).
- 환급금 산정 기준 및 방법, 보험계약 체결 전 환급금 범위에 관한 통지의무 등을 법률에 상세하게 명시하여 보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음(독일보험계약법 제169조 제3항 내지 7항).
- 보험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환급금이 감독법상의 공제율을 고려한 모집비용 및 유통비용을 균등하게 분배한 이후 첫 5년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보상기금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계약비용을 최초 5년으로 분산시키도록 함으로써, 조기 해약의 경우에도 최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4]

■ 독일연방법원은 2012년 7월 25일에 양로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의 약관 조항[5]의 유효성이 쟁점이 된 소송에서 이들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판결[6]하였음. 이 판결은 최저 해약환급금을 보장하고 보험의 투명성을 높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위 개정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

3) 독일민법 제307조 제1항 「약관조항이 신의성실의 요청에 반하여 약관사용자의 계약상대방을 부당하게 불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부당 한 불리함은 그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정에 기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4) 독일보험계약법 제169조 제3항 1문, 이필규, 최병규, 김은경 역저(2009), 『2009년 독일보험계약법』, p. 74~75, p. 108, p. 150에서 재인용.

5) 질멜식 책임준비금적립방식(해약환급금, 해약공제, 신계약비 이연상각)적용 조항 등.

6) 함부르크소비자센타가 도이치링크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약관의 유용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임. 동 소송은 2008년 1월 1일 독일 보험계약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01년부터 2006년 말까지 사용된 약관이 대상이 되었음. 해외뉴스(2012), 『일본생명보험경영』 제80권 제6호. p. 172.

- 독일연방법원은 보험중개수수료가 대부분을 점하는 신계약비를 초기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질멜식 책임준비금적립방식[7]을 적용토록 규정한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된다고 판시하였음.
  - 즉, 법원은 질멜식 책임준비금적립방식이 적용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조기에 중도 해약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매우 적게 지급받거나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 이에 독일연방법원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적립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조항에 대해 "계약의 성질상 인정되는 본질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제한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위태롭게 되고, 신의성실의 요청에 반하여 약관사용자의 계약상대방을 부당하게 불리하게 한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하였음.[8]
- 또한 독일연방법원은 해당 보험약관의 해약환급금 산정 방법에 관한 조항이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해당 약관 조항도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이해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역시 무효라고 판결하였음.

## 우리나라도 해약환급금의 산정기준,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공제 내역 등을 약관 등에 기재하는 것을 통해 보험의 투명성과 법적명확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신뢰 회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시대에 필요한 연금보험과 같은 장기성 보험계약 가입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적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소비자 신뢰 회복은 보험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장기적 경제 상황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생명보험계약과 같은 장기 보험가입에 부담을 가지게 되고, 특히 조기 해약 시 적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다면 보험계약자는 심리적·재정적으로 장기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더욱 기피할 수밖에 없음.
- 최근 일부 보험회사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초기 해약환급률을 높인 보험상품을 출시하여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정책당국도 보험회사의 판매수수료에 관한 감독규정을 변경하여 해약환급률을 높이도록 한 바 있음.[9]

---

7) 신계약비가 계약년도의 부가보험료만으로 조달될 수 없는 평준보험료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약 초년도는 다음 연도 이후보다 순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그만큼 부가보험료를 높여 신계약비 지출에 필요한 초년도 경비를 마련하고, 다음 연도 이후 몇 년 동안 초년도에 부가보험료로 사용한 순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점차적으로 메워나가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임.

8) 독일 민법 제307조 제2항 「어느 조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부당한 불리함이 인정된다. 1. 그 조항이 법률상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인 경우에 그 규정의 본질적인 기본사상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때, 2. 계약의 성질상 인정되는 본질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제한하여 계약 목적의 달성이 위태로운 때」

9) 금융위원회는 2012. 2. 28.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저축성 보험에 대하여 계약의 유지·관리보수 항목(판매 수수료의

-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소비자 보호를 통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회복,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10] 보험계약자가 해약환급금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보험약관 등에 대한 재정비도 검토할 시점임. KiRi

30%)을 신설하되 해약 시 공제금액을 현행 대비 70% 수준으로 낮추고, 판매초기 집행한 판매수수료(신계약비)의 이연자산 한도를 표준해약공제액의 50%(현행 100%)로 제한하였음(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7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10) 최병규(2010), 「보험계약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 『기업법연구』 제24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p. 124~125.